

◎ 제주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24호

「2인 근무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제주지방우정청장

「2인 근무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행정예고

1. 추진내용

2인 근무 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우체국 이용 고객에게 보다 나은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하려는 것임

2. 대상국

명칭	관서급	위치	점심 휴무시간	시행일
제주우체국 제주지방법원출장소	출장소	제주시 남광북5길 3(제주법원 내)	12:00~13:00	‘19.09.01.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 전 화: 064-800-5914, 팩스: 0505-005-2292
- 이메일: icheol@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064-800-5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